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권향엽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95

발의연월일: 2025. 4. 10.

발 의 자:권향엽·김병주·정동영

박지원 • 이상식 • 문정복

김기표 • 허성무 • 김교흥

임미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규제자유특구는 혁신사업 또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규제특례등이 적용되는 구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지정을 신청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지정할 수 있음.

그런데 지정신청을 반려하는 경우 명확한 반려 사유가 제시되지 않는 등 신청한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으며,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에 대한 안내·지침을 마련하는 등 지정 절차의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됨.

이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검토 기준 등을 담은 규제자유특구계획 수립 지침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고,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을 반려하 는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규제자유특구 지정 절차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74조제3항 및 제75조제5항 신설 등).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2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완이 필 요하다고 인정되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기준
 -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등에게 통보하여

야 한다.

- 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3. 신청한 비수도권 시·도지사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의 반려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제5항 후
단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규제자유특구의 지정신청을 반려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제72조(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① ~ ③ (생 략)	① ~ ③ (현행과 같음)
<u> <신 설></u>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
	자유특구 지정신청 내용에 보
	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상
	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
	<u>구할 수 있다.</u>
<u>④</u> 제1항부터 <u>제3항</u> 까지에서	<u>⑤</u> <u>제4항</u>
규정한 사항 외에 규제자유특	
구 지정신청의 구체적인 내용,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제74조(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규제
	자유특구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
	<u>다.</u>
	1. 규제자유특구계획의 타당성
	및 필요성 검토를 위한 세부
	<u>기준</u>
	2.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 및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제75조(규제자유특구의 지정 등) ① ~ ④ (생 략) ① ~ ④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⑤제1항부터제4항까지에서규정한사항외에규제자유특구의지정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공고 등 절차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규제자유특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제자유특구의 지정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 우 반려의 취지를 신청한 비수 도권 시·도지사등과 민간기업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72조제4항에 따른 보완요 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규제자유특구 지정신청 등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신청한 비수도권 시 · 도지사 등이 신청을 철회한 경우 ⑥ -----제5항-----